

대전지방법원 2024. 10. 17 선고 2022나115967(본소), 2022나115974(반소) 판결
[공사대금 ·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대전지방법원 2024. 10. 17 선고 2022나115967(본소), 2022나115974(반소)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8. 9 선고 2021가소13166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영관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철휘

변론종결 2024. 8. 29.

판결선고 2024. 10. 17.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8. 9. 선고 2021가소13166(본소), 2022가소 122982(반소)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56,742원 및 이에 대한 2021. 6. 4.부터 2024. 10. 1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3/5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가. 청구취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에게 5,877,8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944,8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3,406,15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2020. 9. 24. 피고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D센터 신축공사 중 조적, 타일, 방수, 미장, 도장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85,800,000원(공급가액 78,000,000원 + 부가가치세 7,800,000원), 공사기간 2020. 9. 25.부터 2020. 11.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받았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20. 12. 16.경 공사기간을 2020. 12. 30.까지로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원고는 공사 완료 후 실제 시공 내역을 바탕으로 정산하여, 2021. 2. 1. 피고와 사이에서 공사대금을 70,433,000원(공급가액 64,030,000원 + 부가가치세 6,403,000원)으로 감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로부터 2020. 12. 28. 기성금 22,000,000원을 지급받았고, 노무비로 2021. 1. 28. 35,610,260원, 2021. 2. 8. 6,944,870원 합계 42,555,13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갑 제6, 11호증의 각 1, 2, 을 제1, 5,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5,877,870원(= 공사대금 70,433,000원 - 기성금 22,000,000원 - 노무비 42,555,13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하도급 공사 대금 액수

1) 피고의 주장 요지

공사대금의 공급가액 64,030,000원 중 노무비 45,000,000원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해당 부가가치세는 공사대금 70,433,000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단

부가가치세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으로(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 이 사건과

같은 공사도급계약에서 공급되는 용역은 공사의 완성이다(민법 제664조). 따라서 이 사건 하도급 공사계약에 따라 원고가 공급하는 용역은 ‘이 사건 하도급 공사의 완성’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가 그 가액을 64,030,000원으로 평가하여 정한 이상 그 전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지, 이 사건 하도급 공사의 완성 과정에 필요한 노무의 제공 부분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 아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록 피고가 이 사건 하도급 공사에 고용된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 공사’ 중 노무 제공 부분을 분리,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공급하는 것은 아니므로, 마찬가지이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공사대금은 공급가액 64,030,000원 전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6,403,000원을 더한 70,433,000원이다.

다. 피고가 지급한 공사대금 액수

1)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 공사에 고용된 근로자의 노무비 45,000,000원에서 소득세 등 세금과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 또는 공제하고 난 나머지 42,555,130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노무비로 45,000,000원을 지급한 것이다.

2) 판단

갑 제17, 19호증, 을 제8 내지 10, 12, 13, 18, 20,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준공기한 무렵인 2020. 12. 24. 피고에게 ① 2020. 11.분과 2020. 12.분 노무비지급명세서(노임총액 2020. 11.분 25,380,000원 + 2020. 12.분 19,620,000원의 합계액 45,000,000원), ② 이 사건 하도급 공사에 고용된 근로자들이 2020. 11. 1.부터 2020. 12. 23.까지 노임 합계 45,000,000원의 수령을 원고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노임지불위임각서 등을 이메일로 전송한 사실, 이어 원고는 2020. 12. 28. 피고에게 사업주가 피고, 근로자가 위 각 근로자 명의로 된 각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계약서 등을 이메일로 전송한 사실, 피고는 과세관청에 위 근로자들에 대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를 제출한 사실,

여기에 기재된 위 각 근로자들의 소득액 및 원천징수 세액은 위 노무비지급명세서, 노임지불위임각서에 기재된 각 근로자들의 노임 및 세액과 일치하는 사실, 위 노무비지급명세서의 노임총액에서 근로자들이 각 부담할 소득세 등 세금과 4대보험료를 공제한 차감지급액의 합계액은 2020. 11.분 24,481,630원, 2020. 12.분 18,073,500원으로 합계 42,555,13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원고에게 노무비로 합계 42,555,13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 공사에 고용된 근로자들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소득세 등 세금과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 또는 공제하고 나머지 노무비를 모두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노무비 45,000,000원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갑 제12, 15호증을 제출하여 이 사건 하도급 공사에 고용된 근로자들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피고가 아니라 원고라고 다투나, 갑 제15호증(일용노무비명세서)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문서로서 믿기 어렵고, 갑 제12호증(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 공사에 고용된 근로자들에 대하여 소득세 등 세금을 원천징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3,433,000원(= 공사대금 70,433,000원 - 기성금 22,000,000원 - 노무비 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소에 대한 상계항변 및 반소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970,000원을 더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970,000원, 지체상금으로 2,465,155원을 지급하고,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각 채권으로 원고의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하고, 나머지 3,406,155원 및 이에 대한

자연손해금을 반소로 청구한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구체적 내용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의 공급가액 64,030,000원 중 기성금으로 20,000,000원, 노무비로 4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970,000원 $\{=(20,000,000\text{원} + 45,000,000\text{원}) - 64,030,000\text{원}\}$ 을 더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97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이 공급가액 64,030,000원 전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6,403,000원을 더한 70,433,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지체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구체적 내용

이 사건 하도급 공사의 준공기한은 2020. 12. 30.임에도 원고는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가 2021. 2. 4. 자체적으로 준공검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준공기한 다음날인 2020. 12. 31.부터 2021. 2. 3.까지 공사대금 70,433,000원의 1/1000의 지체상금률로 계산한 지체상금 2,465,155원 $(= 35\text{일} \times 70,433,000\text{원} \times 1/1000)$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지체책임의 성립 여부

가) 지체 여부

을 제1,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21. 2. 1. 원고에게 ‘귀사가 2021. 1. 25. 기계실 바닥방수를 마감으로 준공을 하였고 이에 2021. 2. 1.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니 준공계를 접수하고 2021. 2. 2. 준공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 이에 원고는 2021. 2. 2.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공사 완료를 승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준공검사는 받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답장한 사실, 이에 피고는 같은 날 연장된 준공기한

다음날인 2020. 12. 31.부터 위 2021. 2. 2.까지의 지체상금을 청구한 사실, 피고는 2021. 2. 4. 자체적으로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원고에게 위 2020. 12. 31.부터 2021. 2. 3.까지의 지체상금을 재차 청구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 공사계약 당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을 따르기로 정하였고,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은 ‘수급사업자가 기한 내에 공사목적물을 인도하지 않거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원사업자는 지체일수에 지체상금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제51조 제1항)고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2021. 1. 25. 이 사건 하도급 공사가 준공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특별히 다투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 스스로도 ‘2021. 2. 1. 변경계약을 하였으므로 피고가 공사완료를 승인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는바, 원고는 2021. 1. 25. 기계실 바닥방수를 마감으로 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준공기한 무렵인 2020. 12. 15. 실제 시공 내역을 바탕으로 변경내역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송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2020. 12. 24. 노무비 청구를 위하여 피고에게 노무비지급명세서 등을 이메일로 전송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준공기한인 2020. 12. 30.경 이전에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원고는 준공기한인 2020. 12. 30.을 초과하여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준공기한 다음날인 2020. 12. 31.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

나) 귀책사유 유무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다른 공정 지연으로 공사가 지연되었으므로 공사지연에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지체책임의 범위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이 ‘수급사업자가 기한 내에 공사목적물을 인도하지 않거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원사업자는 지체일수에 지체상금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제51조 제1항)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계약은 ‘수급사업자는 준공기일까지 공사목적물을 인도한다’(제22조 제1항),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기성 또는 준공의 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 부분이 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공되었는지의 여부를 지체 없이 검사한다'(제24조 제1항), '목적물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한 기준 및 방법으로 정한다'(제24조 제2항), '지체일수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준공기한을 초과하여 공사목적물을 인도한 경우: 준공기한의 익일부터 실제인도한 날까지의 기간'(제51조 제4항 제2호)이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는 지체상금률을 1일당 계약금액의 1/1000으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계약에 따르면 원고의 의무는 공사목적물을 인도함으로써 일응 완료되고 지체책임도 실제인도한 날까지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2021. 1. 25.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이로써 공사목적물을 인도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가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계약에 따르면 원고가 공사목적물을 인도한 다음 피고가 준공검사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을 뿐 원고에게 준공검사를 받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와 같이 볼 근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지체상금은, 준공기한 다음날인 2020. 12. 31.부터 공사 완료일인 2021. 1. 25.까지 26일간 공사대금 70,433,000원의 1/1000의 지체상금률로 계산한, 1,831,258원(= 26일 × 70,433,000원 × 1/1000)이 된다.

라.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구체적 내용

이 사건 하도급 공사 부분에서 크랙, 벽체 부풀려짐,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그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7호증, 을 제8호증, 을 제14 내지 1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21. 2. 8. 원고에게 '귀사가 시공한 부분에서 하자가 발생하였으니 2021. 2. 10.까지 하자보수를 이행하라'며 사진을 첨부한 공문을 보낸 사실, 위 사진에는 12개소의 벽체 크랙 또는 들뜸

현상이 촬영되어 있는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1. 2. 9. 피고에게 ‘들뜸 현상은 하자이므로 당사에서 처리하겠지만, 균열 부분은 구조적인 결함, 온도 및 이질재료의 수축율 차이, 재료상의 문제, 설계상의 문제 등으로 볼 수 있어 균열의 발생 원인을 검토해달라’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 피고는 벽체의 부풀어 오른 현상을 보수하기 위하여 2021. 11. 17. 하자보수비용으로 150만 원을, 벽체의 크랙을 보수하기 위하여 2021. 12. 30. 페인트 대금 176만 원을, 누수를 보수하기 위하여 2022. 5. 20. 코킹대금으로 99만 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들뜸 현상이 하자임은 원고도 인정한 바 있고, 이 사건 하도급 공사는 방수공사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누수 역시 이 사건 하도급 공사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벽체 크랙의 경우 원고의 공사 부분인 조적, 타일, 방수, 미장, 도장공사 부분이 아닌 다른 공사, 이를테면 골조공사 등 부분으로부터 또는 다른 원인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현상으로, 위 하자가 원고의 공사 부분에서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들뜸 현상과 누수 등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피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담보책임이 민법의 지도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것인 이상 하자 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도급인의 잘못을 참작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1다70337 판결 등 참조), 위 들뜸 현상이나 누수 하자는 원고의 공사 부분 외에 다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이를 엄격하게 구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전체 공사 중 이 사건 하도급 공사가 차지하는 비중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평의 원칙에 따라 원고의 하자담보책임을 50%로 제한한다. 결국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은 1,245,000원(= (150만 원 + 99만 원) × 50%) 이 된다. 이를 초과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2021. 1. 25. 성립한 피고의 지체상금 채권과, ② 공사대금 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적상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 3,433,000원은 피고의 지체상금 채권 1,831,258원,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 1,245,000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356,742원(= 3,433,000원- 1,831,258원- 1,245,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인 2021. 6. 4.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0.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전부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윤지숙, 판사 신일수, 판사 설승원